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 단축 등〉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287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6
1.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 단축	6
2.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수도공사 허가제 도입	12
3. 굴착공사 시 수도시설 매설상황 확인 의무화	19
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 결격사유 및 사후 관리·감독 근거 신설	25
5. 수도 설치비용 부담주체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명확화	32
6. 그 밖의 사항	37
(1) 인용조문 및 용어 정비	39
(2) 저수조 설치신고 수리 및 급수설비 위생조치 지도·감독 주체 정비	40
(3) 권한의 위임 범위 확대	41

I. 제안경위

2026년 6월 16일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5년 강릉 가뭄 재난사태 선포 등 극한 가뭄으로 산업 및 생활용수 제한 등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발전으로 산업용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총인구 감소, 쌀 경지면적 감소 등으로 생활 및 농업용수의 수요는 감소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5년 단위의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는 급변하는 여건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발사업 관련 개별 법령에 따라 개발구역 내에서 수도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현행 수도법 체계에서는 전용수도사업 인가를 받은 경우와 급수 설비를 제외하고는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가 수도공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또한, 수도시설 인근에서 수도공사 이외의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수도시설 매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비함. 이로 인하여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사한 수도시설에서의 수질사고, 수도공

사가 아닌 굴착공사 중 상수관로 손괴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2019년 인천 적수 사고 이후 상수도관망 유지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임.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는 인력·장비 등 요건과 준수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 수도법 체계에서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부적격자에 대한 기준과 점검 등에 대한 관리 규정이 미비함.

현행 수도법 체계에서는 급수설비를 제외한 수도의 설치비용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면,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발사업 관련 개별 법령에서는 정비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대법원 판례에서도 수도법과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에 관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 부담 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로 보아야 한다고 법리를 해석한 바 있음. 이에 수도법 체계에서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

설의 신·증설을 유발하는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현 수도법 체계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도사업자와 개발사업 시행자 간 소송이 다수 발생하는 등 그동안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을 수도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기가 지속되었음. 그리고 현행 수도법 체계는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장래에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만 제공하여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택지개발 등 개발행위를 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조성된 택지에 주택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였을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그동안의 소송 판례를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개선하여 기후위기, 인구·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물 수급 여건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고, 수도사업자의 수도 설치비용 부담의 범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수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의 수도공사에 대한 허가 절차와 굴착공사 전 수도시설의 매설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 협의절차를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를 법

령에 명시하여 부적격 사업자를 사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안 제4조).

나.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는 수도사업자의 허가를 받아 수도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이행 시 처벌규정을 마련함(안 제17조의2 및 제87조).

다. 수도시설 공사 이외의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수도시설의 매설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수도사업자와의 사전 협의절차를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처벌규정을 마련함(안 제20조의2, 제83조 및 제84조).

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결격사유를 명문화하여 부적격자의 등록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1조의5, 제66조 및 제87조).

마.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대행업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실효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함.(안 제66조 및 제87조).

바. 수도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도 설치비용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

설치비용의 부담주체를 명확히 함(안 제70조).

사.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 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만 제공하여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별 원인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1조).

Ⅲ. 검토의견

1.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 단축

개정안은 ①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기본계획 변경 시 용수의 수요 전망 및 공급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②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정비계획 수립 시 수돗물 수요 전망은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⑤ (생략)	제4조(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수요 전망, 공급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 ① ~ ⑥ (생략)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수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⑦-----

현행	개정안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2. 수돗물의 중장기수급에 관한 <u>사항</u> 3. ~ 15. (생략) ⑧ 삭제 ⑨·⑩ (생략)	-----. 1. (현행과 같음) 2. ----- <u>사항</u> (수돗물의 수요 전망은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따른다) 3. ~ 15. (현행과 같음) ⑨·⑩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4조1)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수도정책의 체

1) 「수도법」

제4조(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산업·토지 등 수도 공급의 여건에 관한 사항
2. 수돗물의 수요 전망
3. 수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4. 광역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
5. 지방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
6. 마을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
7. 농어촌생활용수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
8. 공업용수도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
9. 상수원의 확보 및 관리, 대체수원(代替水源)의 확보계획
10. 기존 수도시설의 개량·교체 계획
11. 삭제 <2010. 6. 8.>
12. 수도사업의 경영체계 개선계획
13. 수도기술의 개발계획
14. 수도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계획
15. 수도사업의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16. 수돗물의 수질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17.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8. 수도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19.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제43조와 제48조에 따른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설치·관리에 관한 계획

③ ~ ⑤ (생략)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계적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① 인구·산업·토지 등 수도 공급의 여건에 관한 사항, ② 수돗물의 수요 전망, ③ 수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④ 광역·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함.

【 국가수도기본계획 개요 】

- (목적)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효율적 용수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 (계획기간) 2022~2040(매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 (주요 내용) ▲수요량 산정(생활·공업·광역·지방·마을 등), ▲장래 용수수급 전망 및 용수부족 예상 도시, ▲대체수원 공급능력, ▲시설확충계획(급수 체계 조정, 수도 개발 등), ▲개량 및 안정화 계획(생산시설 및 관로), ▲운영 및 정보관리, ▲상수도 수질관리, ▲수요관리 계획 등
- (수립 결과) '35년 기준(최대수요) 전국 수돗물 수요량 3,145만톤/일, 공급능력 3,658만톤/일
 - 급수구역 및 급수체계 조정(45.5만톤/일, 35개 지자체), 대체수자원 활용(67.2만톤/일, 8개 지자체),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37.1만톤/일, 24개 지자체), 광역상수도 시설확충(108.7만톤/일, 48개 지자체)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또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관할 구역의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도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함)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에는 수도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 및 대체수원 확보 등이 포함²⁾되어야

2) 「수도법」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이 설치·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함.

한편 정부는 2026년 6월 반도체, AI로봇 등 피지컬 AI, AI데이터센터 등 3대 분야의 대규모 투자계획과 함께 전력·용수 등의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³⁾하였음.

용수와 관련하여 정부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소양강댐·화천댐·충주댐 등 한강 수원을 활용하고 통합용수공급사업을 조기 완료하는 한편, 서남권 반도체 거점에는 도수관로 신속 건설 및 다목적댐·대체수자원을 연계하여 거점별 맞춤형 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계획⁴⁾임.

또한, 대형 농업용 댐 용수를 생공용수로 전환하거나, 발전댐 방류방식을 전환하여 발전용수를 생공용수로 상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⁵⁾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도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의2에 따라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도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삭제 <2022. 1. 11.>

2. 삭제 <2022. 1. 11.>

② ~ ⑥ (생략)

⑦ 수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수돗물의 중장기수급에 관한 사항

3. 대체수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

6.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 시설의 배치·구조 및 공급 능력

7. 수도사업의 재원 조달 및 실시 순위

8.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세척·갱생·교체에 관한 사항

9. 수도사업의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0.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 급수구역에 관한 사항

11. 수돗물의 수질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12.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3.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

14.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지방상수도 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수도시설의 운용 및 수도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관계부처합동,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개최”, 2026. 6. 29.

4) 관계부처합동,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보고서”, 2026. 6. 29. p.14 참조

하기로 하였음.

정부가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용수 수요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존 수자원의 용도 전환 및 대체수자원 활용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변화하는 용수 수요·공급 여건을 기본계획에 적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현행 기본계획은 수립 후 5년이 지나야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계획 수립 이후 중대한 산업·인구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국가 차원의 용수수급 계획에 반영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할 경우 변화하는 용수 수요·공급 여건을 보다 신속하게 반영하고, 용수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공급시설 확충이나 대체수자원 확보 등의 대응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정비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의 수요 전망을 따르도록 한 안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별 과다 수요 추계를 방지하고 중복 용역에 따른 지방재정 낭비를 차단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첨단산업 용수 수요 증가 등 급변하는 여건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고 기본계획의 효율적 변경을 위해 용수의 수요·공

5)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장 먼저 미래사회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2026. 8. 4. p.3~4 참조

급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생략하는 등 계획 내용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르는 경우 추계기간⁶⁾ 동안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는 총 94억 4,000만원(연평균 18억 8,800만원)으로 추계된다는 의견임.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4조)	현행(A)	-	-	-	-	-	-	-
	개정안(B)	-	4,720	-	4,720	-	9,440	1,888
	추가재정소요(B-A)						9,440	1,888

주: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향후 국가수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 규모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6) 개정안 부칙은 개정 규정에 따른 최초 국가수도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시점을 203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시점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

2.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수도공사 허가제 도입

개정안은 ①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가 수도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공사에 대한 감독·시정명령 및 완공 시 수질검사 의무를 부여하며, ②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도공사를 시행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87조제1항제4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2(수도사업자가 아닌 자의 수도공사 시행 등) ①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는 수도공사(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인가받은 전용수도 및 급수설비는 제외한다)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

현행	개정안
제8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신설> ②·③ (생략) ④ (생략)	<u>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u> ③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허가된 공사의 진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u> ④ <u>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른 시설 기준 및 제19조에 따른 완공 시 수질검사를 준수하여야 한다.</u> 제87조(과태료)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도공사를 시행한 자</u>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생략)

현행법상 수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주민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체계⁷⁾로 운영되고 있음.

7) 「수도법」

[수도사업 체계]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사업의 경영 주체는⁸⁾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로, 2025년 말 기준 160개의 지방상수도 사업자(지방자치단체)와 1개의 광역상수도 사업자(한국수자원공사)가 있고, 이 중 36개의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 제23조에⁹⁾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환경공단에 지방상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
7. “광역상수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제43조제4항에 따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를 이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한다.
19. “일반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0. “공업용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수도법」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①수도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 또는 상수도조합에 의하여 수도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수도법」

제23조(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①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 및 상수도조합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른 일반수도사업자와 공동으로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수도법 시행령」

제36조(수도시설 수탁기관)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수도 또는 공업용수도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¹⁰⁾하고 있음.

현행법은 인가받은 수도사업자에 한하여 관로 등 수도시설 설치공사¹¹⁾를 시행하도록 규정¹²⁾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인가를 받은 전용수도 설치자¹³⁾나 급수설비¹⁴⁾를 설치하려는 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 9. (생략)

10) 수도사업 위탁운영 시 지자체는 수도정책·수도요금 결정, 신규 수도시설 설치 및 마을상수도 관리 등 위탁업무를 감독하고, 위탁기관(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은 수도시설 운영관리(생산, 공급), 시설 개선(노후관 교체 등), 검침 및 요금부과,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함.

11)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저수(貯水)·도수(導水)·정수(淨水)·송수(送水)·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27.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12) 「수도법」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5. (생략)

제18조(시설 기준 등)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을 설치할 때에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원수(原水)의 질과 양, 지리적 조건, 수도의 종류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① 공업용수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공업용수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시설용량이 1일 1만톤 이하인 공업용수도: 시·도지사

제50조(준용 규정) 공업용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제5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제1항·제6항, 제23조 및 제38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3)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전용수도”란 전용상수도와 전용공업용수도를 말한다.
12. “전용상수도”란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임직원용 주택, 요양소 및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학교·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13. “전용공업용수도”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

공사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내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¹⁵⁾하는 등 실질적으로 수도공사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사전 허가하고 공사 과정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절차는 부재한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가 수도공사를 시행·변경하려는

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제52조(전용상수도 인가) ①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인가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하여는 제21조제6항, 제52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14)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貯水槽)·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구거(溝渠: 도랑)·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96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시설(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제2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①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 ⑦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제2항의 기간까지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그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를 의무화하는 등 행정적 관리·감독 절차를 신설하며, 무허가 공사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개발사업 구역 내 부설 시공 및 수질 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수도시설 설치 단계에서의 안전성 및 위생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하수도법」, 「도로법」 등 다른 사회기반시설 법률¹⁶⁾에서도 사업시행자 등이 시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일정한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공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 및 제재수단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적절한 것으로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별 법령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개발구역 내에서 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16) 「하수도법」

제16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유지는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제80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도로법」

제36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

법제처는 ① 현행법 체계가 일반수도사업(제2장)과 공업용수도사업(제3장)을 장(章)별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수도공사의 시행에 관한 조항 역시 일반수도과 공업용수도로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② 안 제17조의2제3항¹⁷⁾에 따른 시정명령은 제재적 행정처분이므로 구체적인 절차·방법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더라도 시정명령의 요건은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9287)

제17조의2(수도사업자가 아닌 자의 수도공사 시행 등)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허가된 공사의 진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3. 굴착공사 시 수도시설 매설상황 확인 의무화

개정안은 ① 굴착공사자가 굴착공사 시행 전 지하 수도시설 매설 여부를 수도사업자에게 확인 요청하도록 하고, ② 매설 확인 시 위치 표시 및 사고 예방 조치계획을 제출하여 수도사업자의 공사 개시 통보를 받은 뒤에만 굴착공사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며, ③ 사전 확인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개시 통보를 받기 전에 무단으로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제50조, 제83조제4호의2 및 제84조제1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2(수도시설 매설상황 확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이하 "굴착공사자"라 한다)는 해당 토지의 지하에 수도시설이 매설되어 있는지 여부를 수도사업자에게 확인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수도사업자는 해당 수도시설의 매설 여부 및 위치를 확인하여 굴착공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수도시설이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

현행	개정안
제50조(준용 규정) 공업용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제5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제1항·제6항, 제23조 및 제38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는 경우, 굴착공사자는 해당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수도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굴착공사의 현장 위치 및 수도시설 매설 위치의 표시 2. 수도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 예방 조치사항 ④ 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매설된 수도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제3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굴착공사자는 수도사업자로부터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까지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준용 규정) ----- ----- ----- 제20조, 제20조의2----- ----- -----.
1. ~ 4. (생략)	제83조(벌칙) ----- ----- -----.
	1. ~ 4.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설></u> 5. ~ 11. (생략)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설></u> 1. 1의2. 2. (생략) 4. (생략)	4의2. 제20조의2(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 5. ~ 11. (현행과 같음) 제84조(벌칙) ----- ----- -----. 1. 제20조의2제1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시설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수도사업자의 굴착공사 개시 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3. ~ 5. (현행 제1호, 제1의2호, 제2호와 같음) 7. (현행 제4호와 같음)

2026년 6월 2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지하차도 공사 현장에서 배수관로 파손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여 약 2만 가구에 단수가 발생¹⁸⁾하였음.

이와 같은 사고는 도로·하수도·건축 등 수도시설 외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인근에 수도시설이 매설되어 있는지에 대한 사전 확인 부족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음.

18) 연합뉴스, “용인 지하차도 공사현장서 배수관로 파손..2만 가구 단수 피해”, 2026. 6. 2.
- 단수기간: 2026. 6. 2.(화) 09:20 ~ 2026. 6. 3.(수) 00:25

최근 3년간 광역 및 지방상수도 관로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총 131건 중 39건(29.8%)이 다른 공사에 의한 사고로 집계됨.

【 광역 및 지방상수도(23개소, 한국수자원공사 수탁) 관로사고 현황(2022년~2024년) 】

구분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사고(건)수	131	38	46	47
다른 공사에 의한 사고(건)수	39	13	11	15
(다른 공사 비율, %)	29.8	34.2	23.9	31.9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다른 공사로 인한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나주시 우수저류시설 공사에 따른 9,157가구 단수, 광주시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11,198가구 단수, 고령군 도로확장 공사에 따른 9개 기업 용수 차단 등 관로 파손으로 인한 대규모 단수와 조업 중단 피해가 초래된 바 있음.

【 다른 공사로 인한 주요 피해 사례 】

(단위: 백만원)

구분	사고명	사고일시	피해규모	복구비용
1 지방	삼영동 송수관로 손괴로 단수 발생 ↳(원인) 나주시 우수저류시설공사 중 손괴	2023. 6.	9,157 가구	59
2 지방	신현동 배수관로 손괴로 인한 대규모 단수 ↳(원인) 광주시 도로개설공사 중 손괴	2024. 11.	11,198 가구	34
3 광역	영남내륙권 공업계통 단수사고 ↳(원인) 고령군 도로확장공사 중 손괴	2024. 8.	9개 업체 (매출액 7,323억원/년)	139

주) 복구비용: 사고 발생시 실제 투입된 사고복구비 등 산정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러한 사고 발생 시 직접 집행된 복구비용 외에도, 주민의 생활 불편, 상가의 영업 차질, 학교·병원의 운영 장애 및 공장 가동 중단 등 간접적인 사회·경제적 피해가 막대함.

그럼에도 현행법상 수도사업자는 다른 공사 시행 여부를 시공사의 임의 사전 협의나 순찰 점검에 의존하고 있어, 사전 매설확인 미비에 따른 관로 손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굴착공사자가 굴착공사 시행 전 수도시설 매설상황 확인을 위해 수도사업자와의 사전 협의절차를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무단 굴착공사로 인한 관로 파손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여 대규모 단수, 도로 침수 및 산업단지 조업 중단 등 사회·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다른 지하 매설물 관련 법률¹⁹⁾에서도 관로 파손 방지를 위해 굴착공사 착공 전

19)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①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자가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30조의3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자 중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3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한 굴착공사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①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매설상황 확인 및 무단 굴착 금지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적절한 것으로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시설 파손 사고 예방 및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따라 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제23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한 굴착공사자

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 결격사유 및 사후 관리·감독 근거 신설

개정안은 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결격사유 규정을 신설하고, ②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지방환경관서장의 보고·자료제출 요구 및 사업장 출입·검사 권한을 명시하며, ③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5, 제21조의6, 제66조 및 제87조제4항제9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1조의5(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현행	개정안
제21조의5(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③ (생략) 제66조(보고의 요구 등) ① <u>인가관청</u>은 수도의 시설 기준(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기준을 포함한다), 수질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u>수도시설에 출입하여</u> 관계 서류·시설·기자재 및 수질을 검사하게 하거나 <u>수도사업자 또는 전용 수도의 설치자에게</u>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u>니한 사람</u> 4.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21조의6(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삭제>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66조(보고의 요구 등) ① <u>인가관청, 지방환경관서의 장</u>----- ----- 포함한다) 및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 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 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요건 및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 등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 수도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 검사하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신설> ② (생략) 제87조(과태료) ① (생략) ②·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8. (생략) 9.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u>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u> <신설> <신설> <신설> ⑤ (생략)	제 ----. 1. <u>수도사업자</u> 2. <u>전용수도의 설치자</u> 3. <u>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u> ② (현행과 같음) 제87조(과태료) ①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8. (현행과 같음) 9.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u>수도사업자</u> 나. <u>전용수도의 설치자</u> 다. <u>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u> ⑤ (현행과 같음)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²⁰⁾은 상수도관망의 세척, 누수 관리, 상태 점검 등 수도물의 위생적인 공급과 직결되는 전문 행정·기술 위탁 사무

20) 「수도법」

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수도관망의 세척
2.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
3.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도관망의 운영·관리에 해당하는 업무

로서, 상수도관망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²¹⁾하여야 함.

【 상수도관망대행업 등록 요건 】

구분	관망세척	누수관리	점검·정비
기술 인력	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 토목,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전기 또는 환경		
시설	사무실		
장비	가. 세척장비 1조(組) 이상 나. 유량계 2대 이상 다. 수압계 2대 이상 라. 탁도계 및 잔류염소측정기 각 2대 이상 마.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또는 관내시경 장비 1조 이상 바. 밸브개폐기 4대 이상	가. 청음식 누수탐지기 2대 이상 나. 다지점 상관식 누수탐지 장비 1조 이상 다. 유량계 1대 이상 라. 수압계 1대 이상 마. 밸브개폐기 4대 이상	가. 관로탐지기 1대 이상 나. 금속탐지기 1대 이상 다. 산소농도측정기 2대 이상 라. 밸브개폐기 4대 이상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행법상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의
등록, 등록요건 미달,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행정처분 근거²²⁾는

21) 상수도관망대행업 등록현황: 전국 321개소 등록(세척 100, 누수관리 152, 점검·정비 69)

22) 「수도법」

제21조의5(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3.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5.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등록 신청 단계에서 피성년후견인, 파산자, 상하수도·환경 관련 법률 위반자 등 부적격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결격사유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또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 이후 대행업자가 등록요건을 지속해서 유지하는지 여부나 위법 행위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실효성 있는 사후 지도·감독을 이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부적격 대행업자의 시장 진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사후 지도·감독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상수도관망관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수돗물 위생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결격사유 규정은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등 유사 전문 대행업 관련 법률²³⁾에서도 대행기관의 적격성 확보를 위해

6.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수행한 경우

23)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9조의4제1항(제2호와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운용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부적격 대행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등록 요건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법제처는 안 제66조²⁴⁾와 관련하여 ① 현행법 제66조제1항²⁵⁾에 따른 지도·검사는 수도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으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점검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이를 별개의 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②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먹는물관리법」

제15조(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2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9287)

제66조(보고의 요구 등) ①인가관청,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도의 시설 기준(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기준을 포함한다) 포함한다) 및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 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 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요건 및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 등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도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기자재 및 수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수도사업자
2. 전용수도의 설치자
3.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25) 「수도법」

제66조(보고의 요구 등) ①인가관청은 수도의 시설 기준(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기준을 포함한다), 수질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도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기자재 및 수질을 검사하게 하거나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에 관한 권한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있으므로 지도·점검 주체 역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5. 수도 설치비용 부담주체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명확화

개정안은 ①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수도 설치비용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②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설치로 장래 수도시설 신설·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부과 대상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및 제71조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u>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u>	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 ----- <u>인</u> <u>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u> <u>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도사업자</u> -----.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u>설치하여</u>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u>자</u> 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 ----- ----- <u>설치하</u> <u>여 해당 수도시설 또는 장래</u> ----- ----- <u>증설</u> -----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u> <u>발사업의 시행자를</u>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상 급수설비를 제외한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²⁶⁾이나,

수도사업자는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하여 수도공사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 손괴자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을 부담²⁷⁾하게 할 수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 제65조²⁸⁾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음.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

부과요건 또는 대상	납부의무자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수도공사 비용발생 원인제공자(수도시설 신·증설 원인 제공자 포함)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경우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자 또는 행위자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6) 「수도법」

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27)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28)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에는 총 4만 5,234건에 대해 3,919억 6,200만원이 부과되어 건당 평균 부과액은 867만원이었으며, 3,703억 700만원(징수율 94.5%)이 징수되었음.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부과			징수		차이		징수율
	건수	금액(A)	건당 평균금액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B/A)
2025	45,234	391,962	8,665,207원	44,748	370,307	486	21,655	94.5
2024	49,097	376,358	7,665,600원	47,845	362,282	1,252	14,076	96.3
2023	59,315	519,186	8,753,030원	58,093	515,006	1,222	4,180	99.2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등 개발사업 관련 개별 법령에서는 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²⁹⁾하고 있어, 비용 부담 주체를 둘러싼 법령 간 해석 충돌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부담금 납부 주체, 부과 대상 범위, 신설·증설 유발 시기 등에 대하여 수도사업자와 개발사업 시행자 간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함.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 현황(2015~2025년) 】

(단위: 건)

구분	합계	납부주체	부과대상 범위	신·증설 유발시기	산정기준(이중부과)	기타
판결완료	385	229	6	21	99	30
진행 중	40	4	5	6	14	11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수도법」과 개별 개발사업법 간 관계에서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비용 부담 의무를 인정하고, 택지개발사업 등에서 원인자부담금 납부 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개발사업 시행자이며, 즉시 수도시설 신·증설 공사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장래 용수 수요를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 관련 대법원 주요 판례 】

구분	사건번호	주요내용
수도설치 비용부담 주체	2024두58289 (2025. 9. 25.)	· 「수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신·증설에 관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설치의무 및 비용 부담 주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자로 보아야 함.
원인자부담금 납부주체	2019두30140 (2020. 7. 29.)	·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그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의무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기	2022두48837 (2024. 7. 25.)	· 「수도법」 제71조제1항은 즉시 수도시설의 신·증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수돗물을 다량 사용하는 시설 설치로 장래 신·증설 원인을 제공한 경우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가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함.

이에 개정안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도 설치비용 부담 규정에 적용 제외를 명확히 하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주체 및 부과대상 시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명확히 반영하여 불필요한 소송 및 행정력 소모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됨.

참고로 「하수도법」에서는 비용부담 원칙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라는 규정을 두어 개별 개발법률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담금 부과대상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음.

【 「수도법」과 「하수도법」 비교 】

구분	수도법	하수도법
비용부담 원칙	급수설비를 제외하고 수도사업자가 부담 * 개발사업 관련 개별법과 원인자부담금 간 충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청이 부담(제57조) * 개별법과의 관계에 대한 제외 규정
부담금 부과대상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 제공 또는 손괴시 * 산정기준, 부과대상 등 세부기준을 조례로 위임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10톤/일)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제61조) * 부과대상 명시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 설치비용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고, 원인자 부담금 관련 소송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6. 그 밖의 사항

개정안은 ① 개정 법률 반영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안 제18조), ② 저수조 설치신고 수리 및 급수설비 위생조치 지도·감독 주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확화하며(안 제33조), ③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대상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안 제33조의2),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수임기관의 범위에 소속기관의 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8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시설 기준 등) ① (생략)	제18조(시설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 제3조제24호에 따른 저수조를 설치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시설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3조제26호----- ----- -----. ----- ----- ----- ----- -----.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등) ① (생략)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도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	② -----

현행	개정안
② ~ ⑦ (생략) 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u>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 관서의 장</u> 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 ----- ----- ---- <u>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 지사</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인용조문 및 용어 정비(안 제18조제3항 및 제33조의2)

현행법 제3조제26호에 따른 급수설비³⁰⁾는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등을 말함.

급수설비 정의는 현행법 전부개정(법률 제8370호, 2007. 4. 11. 전부개정) 시 제3조제24호에 규정되었으나, 2024년 10월 현행법 일부개정(법률 제20517호, 2024. 10. 22. 일부개정) 시 제3조제26호로 호 번호가 이동되었음.

이에 따라 제18조제3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저수조의 정의 조항 인용 번호를 ‘제3조제24호’에서 ‘제3조제26호’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30)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육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貯水槽)·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한편, 안 제33조의2는 현행법 조문상 단순 오기인 ‘일반수도업자’를 ‘일반수도사업자’로 정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함.

(2) 저수조 설치신고 수리 및 급수설비 위생조치 지도·감독 주체 정비(안 제33조)

수도사업의 경영 주체는³¹⁾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이고, 일반수도사업자³²⁾는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로서 지방상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상수도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있음.

현행법상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수리 및 급수설비 위생조치의 지도·감독 주체는 일반수도사업자로 규정³³⁾되어 있어, 광역상수도 전담기관

31) 「수도법」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①수도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 또는 상수도조합에 의하여 수도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3. “일반수도사업자”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는 제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삭제 <2018. 6. 8.>
3.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수도조합이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4.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0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5. 마을상수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33)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등)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인 한국수자원공사까지 관할권자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신고 수리 및 지도·감독 주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집행 주체 간 역할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3) 권한의 위임 범위 확대(안 제78조)

현행법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권한의 위임 대상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정³⁴⁾되어 있음.

그러나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등 고도의 기술적 전문성과 시험·분석 장비가 요구되는 사무는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성을 갖춘 소속기관이 직접 수행할 필요성이 큼에도 현행법상 위임 근거가 미비한 측면이 있음.

② 수도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36조제1항에서 같다)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4) 「수도법」

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권한의 위임 대상에 소속기관
의 장을 추가하여 위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문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548